

# 전 주 지 방 법 원

## 제 5 민 사 부

### 판 결

사        전                    2014나9970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강  
피고, 항소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대표이사 차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4. 9. 26. 선고 2014가소  
                                  107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4.  
판 결 선 고                2015. 9. 2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21,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김00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4. 위 법원으로부터 "김00은 원고에게 51,113,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3.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김00은 2013. 12. 2.경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순번	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자	해약환급금(원)
1	(무) 대한변액CI	13439◇◇◇◇	김00	3,533,128
2	(무) 대한변액CI	13439◇◇◇◇		1,580,987
3	(무) 주니어CIⅢ	12860◇◇◇◇		600,337
4	(무) 메디콜암	4165◇◇◇◇		460,817
5	(무) V-dex연금	13984◇◇◇◇		17,386,945
6	(무) 유니버설CI	12860◇◇◇◇		3,006,227

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위 판결금 등 59,803,30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00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환급금)청구권 중 24,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3.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위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의 취지가 담긴 위 추심명령은 2014.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 12. 원고에게 위 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보험에 관한 해약환급금 4,682,679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표 순번 제5번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2014. 1. 15. 기준 해약환급금은 17,353,980원이다.

바.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한 보장계약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제2보험기간) 중 살아있을 경우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제1보험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1,200만 원 또는 600만 원과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서 월공제액(당월분의 위험보험료, 납입후 유지비,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2보험기간에 보험계약자가 살아있는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1,010,000원은 저축보험료 821,864원, 위험보험료 740원, 부가보험료 187,396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4,121,397원 (= 해약환급금 17,353,980원 × (저축보험료 821,864원 / 전체보험료 1,010,000원),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금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의 압류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추심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보험은 보험금의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보험이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의 해지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도에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기납입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된다)인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장성과 저축성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보장성보험 부분)과 만기환급금(저축성보험 부분)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보험료도 구분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는 손실금과 운용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적립금으로 하여 일정 기간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립금에 일정금액을 더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적립금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바, 이는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 보험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1,010,000원 중 저축보험료는 821,864원인 반면 위험보험료는 740원에 불과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다.

2) 피고는 다음으로 보장성 보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만을 추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의 성질이 저축성 보험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험에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일부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를 자인하여 청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4,121,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김성겸
	판사	정윤현